

## 오리 민간 자율비축 지원사업 시행지침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축산식품부	축산경영과	사무관 이상훈	044-201-2338
		주무관 안준영	044-201-2339

### I. 사업개요

#### 1. 목적

- 주기적인 AI 발생에 대비하여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하절기 오리 생산·비축 자금을 지원하여 동절기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

#### 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 (축산발전시책 강구)

#### 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합 계	-	-	-	10,000	10,000
용 자	-	-	-	10,000	10,000

### II.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# 1. 사업대상자

-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에 등록한 오리 계열화사업자

#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하절기에 오리고기를 생산·비축한 후, 동절기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려는 업체

○ 지원 제외

- 2020년 1월 1일 이후,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

(i) 대상 법령 :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, 가축전염병예방법

(ii) 사업 제한기간 : 최근 처분일로부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산정

(iii) 지원 제한기간

1) 징역(집행유예 포함), 벌금 : 3년

2) 과태료(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), 과징금, 영업정지 : 2년

3) 과태료(1회),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\* : 1년

\* 다만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(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시정조치 여부, 시정 과정 등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)

4)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: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

- 시장공급 억제 및 비축물량 방출 등 사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오리 계열화사업자

### 3. 지원대상

○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, 도축, 가공, 보관, 판매 등에 소요비용

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오리고기의 생산·비축·방출

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○ 지원형태 : 국고융자

○ 융자기간 : 2년 이내

○ 지원조건 : 0~1%

- 전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평가결과 가·나등급 : 0%

- 전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평가결과 다등급 : 1%

\* 다만, 다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항목 중 계열화사업자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0% 적용

○ 사업 의무량 : 오리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고려해 자율 비축하고, 산지가격 상승·하락 수준에 따라 비축물량의 시장공급 억제 또는 비축물량 방출 등 시행 협조

○ 사업시행기관 : 시·군·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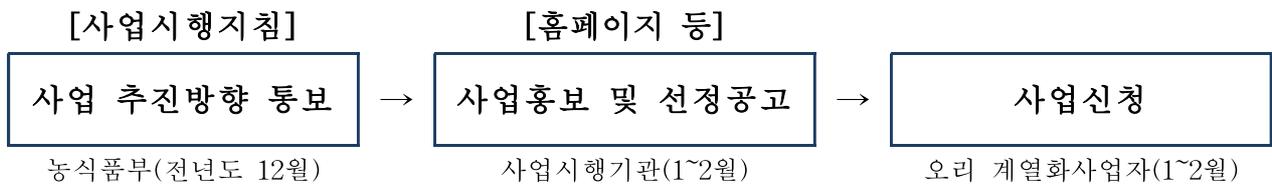
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연 30억원 이내

- 사업신청이 저조하거나 배정자금의 포기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 시에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배정 가능

## 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### 1. 사업신청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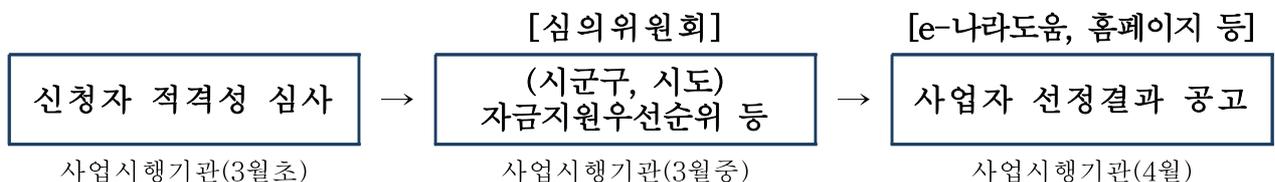


-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, 각 사업시행기관(시·군·구)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.(1~2월)
  -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- 본 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오리 계열화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.(21년. 1~2월)

#### < 사업 신청서류 >

- ① 사업신청서 (서식1), ② 사업계획서 (서식2), ③ 대출신청자료 (서식3), ④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(서식 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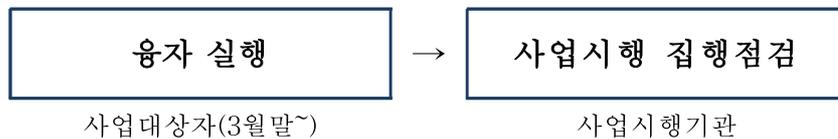
### 2. 사업자 선정단계



-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에 제출한다.(3월 초순)

- \*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, 자금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의할 수 있다.
- \*\*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, 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한다.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(서식 5)를 제출한다.
- 시·도는 시·군·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,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.(3월 중순)
- 농식품부는 시·도에서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원 예산을 확정하고, 각 시·도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.(3월 하순)
  - 사업시행기관은 확정된 사업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.
  - 배정자금의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접수 및 자금 배정

### 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- 대출 실행기한 : 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”에 따른다.
- 사업대상자는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.
  - 시·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도·점검한다.
- 사업대상자는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대출실행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, 사업시행기관은 이를 시·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다.

### 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.
  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완료 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량 불이행 또는 자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출금 회수, 대출제한 등 조치하고,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.



##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### 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의 용자 추진 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의 용자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### 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의 용자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

<별지 제3호 서식>

## 대출신청자료

### 1. 신청자

사업 조직의 명칭		사업 조직의 형태		계약농가수	
대표자명		생년월일		전화번호	(        ) -
주소					
신청내용	사업명	오리 민간자율비축지원사업			
	사업비 (융자)	천원			
	자금의 용도				

### 2. 예금 및 융자금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예금 현황			융자금 현황			
기관명	예금종류	금액	기관명	대출일	상환기일	금액

### 3. 담보물(재산) 현황

소재지	종별	면적 (m <sup>2</sup> )	소유자	신청자와 의 관계	예상 평가액 (백만원)	비고 (기설정금액)

### 4.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:        천원

※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 월    일  
신청자(서명 또는 날인)

<별지 제4호 서식>

##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

(앞 쪽)

1. 신청자 인적사항 (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기준)

① 상호명		② 사업자 등록번호 (대표자 생년월일)	-    - (    년    월    일)
③ 전화번호	(    )    -	④ 대표자 성명	
⑤ 신청사업명			

2.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(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내역만 작성)

⑥ 지원받은 년도	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	⑦ 총사업비 (천원)	⑧ 정부지원금(천원)		
			계	보조	융자
년					
년					
년					
년					
년					
년					
년					
년					
년					
년					
년					

# 신 용 조 사 서

## 1.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(    년    월    일 기준)

주 소				전화번호			
상호명	사업자등록번호 (대표자 생년월일)			대표자 (성명)			
신청사업명	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	보조		대출		자담

## 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현재 연체사실			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유	무

## 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		천원		

※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“대출신청자료” 에 의함  
 (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)

## 4.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(조사기준일현재) :

천원

### ☞ 유의사항

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(            ) 협동조합장 (인)

(            ) 시군지부장 (인)